

〈書 評〉

田鳳德 著 『經濟六典拾遺』

朴 秉 濠*

한국법제사는 연구사도 짧거니와 연구인구도 적어서 아직도 많은 미개척분야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연구성과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거나 혹은 피상적인 연구나 몇개의 사료를 통한 만용의 가설이 검증된 사실처럼 통용되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 게다가 법제사연구의 가장 기본자료로서의 법전편찬사나 법전의 비교·분석마저도 고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연구인구의 과소에도 있지만 역사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명한 전제인 사실의 정확한 실증의 훈련을 쌓지도 않고 이념형적 개념의 구성 내지는 결정론적 역사학방법론에로 앞걸음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더구나 실정법학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에 익숙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법제사연구에서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경원 내지 기피하려는 경향마저도 없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언필칭 쌓아 놓았다고 하게 될 누각이 언젠가는 필연코 사상누각으로서 허물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성하던 차에 법학도를 중심으로 한 법사학계에 일대 경종을 울림과 함께 빛나는 업적이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진봉덕 선생의 「經濟六典拾遺」이다. 진봉덕선생께서는 일찌기 대학재학시절에 암행어사제도를 연구하시어 주목을 받았고 광복후에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출간하였거니와 「古代官名 “加” 研究」 「新羅最高官職上

* 서울대 교수, 韓國法史學會會長

大等論」「新羅律令攷」등의 精緻한 實證的 研究論文을 발표하셨고 고대사 분야 뿐만 아니라 근대한국의 법사상에 걸쳐서도 개척적 연구를 하시어 이를 묶어 「韓國近代法思想史」(博英社, 1981)를 펴냈다. 선생의 모든 학술논문에는 예외없이 특히 독일법제사학에 있어서의 실증주의적 방법론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법제사를 사적연속성의 시각에서 근대화로의 발전적 의지로 기초치우려는 「관(觀)」이 확실히 엿보인다. 하나의 논문을 대하면 마치 소박실증주의 같은 인상을 받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육전과 속전은 인멸되어 그 영본조차도 전하지 않는 데 1932년에 당시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花村美樹교수가 경제육전의 편찬경과 및 편별·체제와 함께 그 대강의 내용을 연구하여 『法學論纂』에 발표한 것(經濟六典について, 京城帝大 法文學會論集 第5冊, 昭和7年)이 있을 뿐 그후로는 전혀 연구의 진전이 없이 방치되어 왔다. 선생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경제육전을 복원할 생각을 가졌으나 여러가지 공직생활과 변호사업무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83년에 법조인생활을 마감하고 복원작업에 착수하여 1988년 7월에 원고를 완성하셨다. 74세에 시작하여 5년의 세월을 거쳐 79세에 완성하고 80세에 출간한 것이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도 젊은 학도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내셨으니 참으로 「獨往奇秀」라고 해도 부족함을 느낄 정도이다. 허전하고 막막했던 경제육전시대가 참으로 짙고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억누를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은 먼저 經濟六典解題라는 序意에서 경제육전의 편찬연혁을 상술함으로써 경제육전의 법제적 가치를 조명하였고 「經濟六典」「續六典」「六典謄錄」의 순서로 왕조실록을 통해서 조문을 복원하였고 끝에 「經濟六典拾遺總目錄」과 「條文 및 事項索引」을 붙여 이용의 편의를 기하였다.

법전의 綱目體裁는 경제육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므로 經國大典의 그것을 기준삼았으며 拾遺된 항목은 定宗 8, 太宗 141, 世宗 605, 文宗 74, 端宗 38, 世祖 34, 睿宗 3, 成宗 44, 中宗 7,

明宗 2, 宣祖 1의 총 957記事項目에 이른다. 각 조문記事에서는 조문이나 강목은 모두 고딕체로 하여 당해 조문의 원형 내지 大意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註」를 붙여서 당해 조문이나 제도의 연혁의 근거를 명시하여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기사 출처인 실록원본의 卷面과 번역본의 권면도 표시하는 친절도 배풀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역사학자나 법사학자들은 각자의 연구테마에 따라 경제육전 규정을 참고하였을 터이므로 그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복원이 되어있는 셈이지만 전체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업적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질적인 사료의 제약상 그 완전상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제도·규정이 「萬世成法」 「祖宗成憲」 「經久之法」 내지는 「非經久之法」으로서 존재하였으며 시행되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서는 경국대전 규정의 연혁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선생의 이 저서는 실록기사의 단순한 摘出羅列이 아니라 빛나는 연구업적이다. 日本의 仁井田 陞박사가 「唐令拾遺」를 이룩하여 唐令이 復元되었는데, 이제 그에 손색없는 拾遺가 선생에 의하여 우리 경제육전에서 이룩되어 복원되었으니 광복 후의 법제사학계에서는 물론 일반사학계에서도 금차탐으로 평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보다 더 많은 기록사료가 발굴되어 이 拾遺를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경국대전과의 연계에까지 넓히는 연구를 80세를 넘으신 老先生께 의지하는 것은 실례이리라. 참으로 경제육전은 500여년이 지나 선생의 힘으로 소생한 것이다. (亞細亞文化社, 1989, 338면)